



Asian Domain Name Dispute Resolution Centre

결 정 문

사건번호: KR-1800182

신 청 인: 삼성전자 주식회사(특허법인 태평양 대리인 변리사 김정현)

피신청인: 정부민

1. 당사자 및 분쟁 도메인이름

신 청 인: 삼성전자 주식회사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삼성로 129 (매탄동)

대리인: 특허법인 태평양 변리사 김정현

서울서초구 강남대로 343 신덕빌딩 11층

피신청인: 정부민

서울특별시

분쟁 도메인이름은 "samsungdata.com"이며, 피신청인에 의해 (주)메가존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85길 46 GALA빌딩)에 등록되어 있다.

2. 절차의 경과

신청인은 2018. 3. 27. 아시아도메인이름분쟁조정센터(ADNDRC) 서울사무소(이하 '센터'라고 함)인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도메인이름의 이전을 구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2018. 4. 2. 센터는 등록기관에게 등록인의 정보를 요청하는 전자우편을 발송하였고, 등록기관은 2018. 4. 4. 센터에 등록인의 확인 등 세부사항을 확인해주었다.

2018. 4. 13. 센터는 분쟁해결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전자우편을 통하여 피신청인에게 발송하면서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는 마감기일이 2018. 5. 3.임을 통지하였다. 또한 같은 날 등기우편을

통하여 절차개시 통지 및 신청서 등 서류를 전자우편으로 발송하였음을 통지하였다.

2018. 5. 3. 피신청인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2018. 5. 4. 센터는 보충규칙에 따라 서정일 위원을 행정패널로 선임요청 하였고, 2018. 5. 4. 행정패널로서의 승낙 및 독립성과 독립성의 선언을 확인 받아 2018. 5. 14. 행정패널을 구성하였다.

3. 사실관계

‘SAMSUNG’은 신청인 그룹사의 상표로 신청인을 비롯한 각 계열사의 상품 및 서비스를 나타내는 표장으로 오랜 기간 동안 국내외로 널리 사용되어 온 바, 현재는 신청인 그룹사의 출처표시로 전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표장이다. 신청인은 ‘SAMSUNG’에 대한 상표권을 세계 각국에 등록, 보유하고 있는 ‘SAMSUNG’ 표장에 대한 정당한 권리자이다(갑 제5호증 참조).

피신청인은 이 사건 표장이 포함된 이 사건 도메인이름 “samsungdata”을 등록, 보유하고 있으나, 이 사건 도메인이름은 현재 사용하지 않고 있다.

4. 당사자들의 주장

A. 신청인

신청인은 전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표장인 "SAMSUNG"(이하, "이 사건 표장")에 대한 정당한 권리자이며, 이 사건 도메인이름에서 확장자에 불과한 ".com"을 제외한 "samsungdata"은 신청인의 대표적인 출처표시로서 널리 알려져 있는 'SAMSUNG'과 '자료'를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되는 영어단어인 'data'가 결합된 것으로 누구나 쉽게 인식할 수 있을 것이므로, 피신청인의 이 사건 도메인이름은 신청인의 표장과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한 도메인이름에 해당한다. 반면 피신청인은 정당한 권리자인 신청인으로부터 이 사건 상표 사용에 대해 어떠한 권한도 허여 받은 바 없기에, 피신청인은 이 사건 도메인이름의 등록에 대한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 피신청인이 이 사건 표장이 그대로 포함된 도메인이름을 등록, 보유하고 있는 것은 이 사건 도메인이름을 양도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는 부정한 목적에 기인한다.

B. 피신청인

피신청인은 이에 대하여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아니하였다.

5. 검토 및 판단

규정 제4조 (a)항에 따르면 신청인은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입증해야 한다.

(i) 신청인이 권리를 갖고 있는 상표 또는 서비스표와 등록인의

도메인이름이 동일하거나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하다는 것,

(ii) 등록인이 그 도메인이름의 등록에 대한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는 것, 그리고

(iii) 등록인의 도메인이름이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 및 사용되고

있다는 것.

따라서 상기의 사항과 관련하여 당사자가 주장하는 논점을 판단하면 다음과 같다.

A. 상표·서비스표와 본 건 분쟁 도메인이름의 유사

피신청인의 이 사건 도메인이름 “samsungdata.com”에서 확장자에 불과한 “.com”을 제외하면 식별력있는 요부는 신청인의 저명한 상품 및 영업에 관한 출처로서 널리알려진 ‘SAMSUNG’와 특별한 의미가 없는 나머지 부분인 ‘data’가 결합된 것이라 할 수 있고, ‘data’가 특별히 새로운 관념을 형성하지 않는 단순 용어로 연결되어 있음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도메인이름은 그 외관 및 호칭에서 신청인의 이 사건 표장과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하다.

B. 피신청인의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권리 및 정당한 이익의 부존재를 주장하고 있는바, 피신청인은 이 사건 표장을 포함하는 상표에 관하여 상표권 등 아무런 정당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 또한 피신청인은 신청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자로, 정당한 권리자인 신청인으로부터 이 사건 상표 사용에 대한 어떠한 권한도 허여 받은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표장이 그대로 포함된 이 사건 도메인이름을 등록, 보유하고 있다.

피신청인이 이 사건 도메인이름을 등록한 것은, 신청인의 이 사건 표장이 세계적으로 매우 저명한 상표로서 인식되기에, 피신청인이 이러

한 저명한 상표를 포함하여 구성된 이 사건 표장의 명성에 편승하고자 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바, 피신청인은 이 사건 도메인이름의 등록, 보유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도 가지고 있지 않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C. 피신청인의 부정한 목적

이 사건 표장은 피신청인이 이 사건 도메인이름을 등록하기 훨씬 이전부터 신청인 그룹사의 상표로서 널리 알려져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신청인이 이 사건 도메인 이름을 등록하기 전에 이 사건 표장을 전세계 주요국가에 출원·등록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도메인 이름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나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지 않은 피신청인이 이 사건 표장과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한 이 사건 도메인 이름을 등록 받았다고 볼 수 있는바, 피신청인은 이 사건 표장의 명성에 편승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는 등의 부정한 목적으로 이 사건 도메인이름을 보유하고 있음이 명백하다 할 것이다. 나아가 피신청인이 이 사건 도메인이름을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고, 양도를 목적으로만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는 점 역시 피신청인이 정당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신청인이 해당 도메인이름을

등록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이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이 사건 도메인이름을 등록하였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다.

6. 결정

위와 같이 검토한 결과, 본 행정패널은 '규정' 제4조 (a)항 및 '절차규칙' 제15조에 의하여, 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피신청인에 대하여 분쟁도메인이름인 <samsungdata.com>을 이전할 것을 결정한다.

1인 행정패널

서정일

결정일: 2018년 5월 28일